

# 『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-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 
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1선거구 이영실 의원입니다.  
『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 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 
드립니다.
-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 
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  
로써,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속하게 발견  
하고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을 도모  
하고자 하였습니다.
-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  - 안 제5조제2항에 직무와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 
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  
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,

- 안 제5조제3항에 시장으로 하여금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